No: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

(갑)	장기요양관리번호: 수급자 :	(을)	장기요양기관기호: 3-41280-01021 사업자 명칭: (주)복음의료기 대표자: 김광현

□이용의뢰서	계약자 :	수급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규정에 따라 수급자(이하"갑")와 장기요양기관(이하"을") 쌍방은 다음 같이 복지용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2.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목적물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제한한다.
3.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구매,대여 품목

품 목 명	제품코드(제품기호/일련번호)		제품명	계약기간	구분	개	적용금액	본인부담금
				대여 합계				
				판매 합계				
				총 합계				

□기타 협약사항

1. 문의사항 연락처 : (주)복음의료기(전화:031-971-9720)
2. "갑" 은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에 대한 본인부담금 을 현금,카드 결제하거나 은행으로 입금한다.

입금계좌 : 농협 / 351-0834-0905-13 / 예금주 : (주)복음의료기

3. "을" 은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4. "을" 은 "갑" 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갑" 이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갑 '이 부담한다.
 (대여중인 복지용구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사망 시 즉시 반납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 후 "15일" 경과 시 "전(수)동침대" 는 급여가 제한 된다.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 포함)
5. "갑" 은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6. "갑"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계약자("갑")의 의무
 가. "을" 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갑" 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을" 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분실 및 훼손한 경우 그 책임은 "갑 '이 부담한다.
8.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과 "을" 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계약자 쌍방이 본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한다. (단, "갑"의 서명은 복지용구 상담 및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계 약 일 : 일

(갑) 수급자 : (을) 사업체 : (주)복음의료기

계약자 : (인또는서명) 대표: 김광현 (인또는서명)